

1. 개정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일부개정령안 제37조의2 신설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32조의2)
- 나.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 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평 반영산식 개정(안 제52조)
- 라. 채용시험 체력검사 시 좌우악력 평가기준 개선(별표5)
- 마. 근무성적평정 시 제1평정요소를 현행화하고, 가점평정을 위한 자격 중에 변호사, 변리사 등 추가(별표6, 별표9)
- 사. 근무성적평정 시 “해양경찰 인재상”을 반영하여,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별지 제1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채용점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채용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 조치
 2.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 합격자 발표
-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점”을 “3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2점”을 “27점”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를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로, “제1호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를 “총정 : [”로, “1.3”을 “1.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를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로, “1.3”을 “1.4”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평정점”을 “평정점에 37.5점을 더한 수를 2로 나눈 점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에 37.5점을 더한 수를 2로 나눈 점수. 다만,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다음 연도 평정점으로 본다”로 한다.

3. 경장 · 순경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1.4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수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수치 중 최댓값”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업무 수행 점수(9점)의 고소 · 고발 · 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 · 처리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해상경비 · 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 업무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각종 연구 · 분석 및 장비 · 기술 등 개발 업무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지원 업무의 내용의 배점란, 같은 란의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시행·결재의 내용의 배점란 및 같은 란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의 내용의 배점란 중 “0.1”을 각각 “0.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며, 같은 목 중 “통합방위본부장”을 “통합방위본부장, 합동참모의장”으로, 같은 란 중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을 “참모총장”으로 하며, 같은 목 중 “합정장·연대장”을 “합장·연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063점)	0.756점	1.512점	2.268점	3점

별표 8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084점)	1.008점	2.016점	3점

별표 8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	1년
점수(월 0.250점)	3점

별표 8 제5호 중 “경장”을 “경장·순경”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	6개월
점수(월 0.500점)	3점

별표 8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의 자격증(0.5)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변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합부로 물품을 받는 버릇”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 제공을 받은 적”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내외 사람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버릇”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제공을 요구한 적”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호(·) 중 “친절도 및 협조성”을 “사명감 및 책임감”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책임성”을 “도전성”으로 하며,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청렴성 및 공정성

별지 제18호서식 제1호 중 “근무성적란 윗줄:”을 “”근무성적”란 윗줄: 총경의 경우”로, “합한 점수를 65점 만점으로 환산(1.3배)해서”를 “합산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1.4배)해서 적고, 경정·경감·경위·경사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1.4배)해서 적으며, 경장·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1.4배)해서”로 하고, 같은 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근무성적란 가운데줄: 왼쪽 란”을 “”근무성적”란 가운데줄: 총경의 경우 왼쪽 난”으로, “적습니다”를 “적고, 경정·경감·경위·경사의 경우 왼쪽 란부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의 40퍼센트,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의 60퍼센트의 점수 순으로 적으며, 경장·순경의 경우 왼쪽 란에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점수를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근무성적란 아랫줄: 왼쪽 란”을 “”근무성적”란 아랫줄: 총경의 경

우 왼쪽 난”으로, “적습니다”를 “적고, 경정·경감·경위·경사의 경우 최근 1년 전 2년 이내 근무성적,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 순으로 적으며, 경장·순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성적을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기준 중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찰청장 표창, 정장 표창에 대해서는 별표6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 가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2조의2(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채용점검위원회 위원</u> <u>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u> <u>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u> <u>2분의 1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u> <u>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u> <u>한다.</u> <u>② 시험실시권자는 충실한 점검</u> <u>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u> <u>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u> <u>게 제공해야 한다.</u> <u>③ 채용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u> <u>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u> <u>자를 발표하며, 이상이 있는 경</u> <u>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u> <u>1.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u> <u>경우 :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u> <u>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u> <u>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u> <u>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 조</u> <u>치</u> <u>2.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u> <u>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u> <u>합격자 발표</u>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② (생략)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

----- 30점-----

---.

1. -----

27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

----- 다음 각 호

의 방식으로 -----

----- <단서 삭제>

1. 총경 : [-----

$\times 30/100) + (\text{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20/100)] \times \underline{1.3}$

2. $[(\text{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60/100) + (\text{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40/100)] \times \underline{1.3}$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 1.4

2. 경정·경감·경위·경사 : [-----

----- 1.4

3. 경장·순경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underline{1.4}$

④ -----

-----.

1. -----
평정점에 37.5점을 더한 수를 2로 나눈 점수. -----
-----.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에 37.5점을 더한 수를 2로 나눈 점수. 다만,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다음 연도 평정점으로 본다.

산정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